##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7739

발의연월일: 2025. 1 23.

발 의 자:이원택・이용우・임미애

주철현 • 서삼석 • 김문수

김한규 · 위성곤 · 임광현

윤준병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탄소중립, 기후위기 극복, 생태계 보전과 생물다양성의 회복뿐만 아니라 건강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친환경농업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은 2019년 81,717ha, 2021년 75,435ha, 2023년 69,412ha로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친환경 인증 농가 수 역시 2019년 58,055호, 2021년 55,354호, 2023년 49,520호로 줄어들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농어촌공사 위탁이나 주말 체험영농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어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려는 농업인들이 농지를 이용하는 데 있어 제약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친환경농업을 하려는 농업인들에 대해 개인 간 임대 및 무상사용을 허용함으로써 친환경농업의 안정적 유지와 확대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탄소 중립 실현, 생태계 보전, 건강한 농산물 생산 등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고자 함(안 제23조제1항제10호 신설).

법률 제 호

##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유기식품 인증을 받은 자, 제34조에 따라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하는 경우

##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	제23조(농지의 임대차 또는 사용		
대차)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대차) ①		
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농			
지를 임대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u>&lt;신 설&gt;</u>	10.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		
	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		
	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유		
	기식품 인증을 받은 자, 제34		
	조에 따라 무농약농산물 인증		
	을 받은 자에게 농지를 임대		
	하거나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		
	<u>우</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